

2025년 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사무직) 채용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직) 공개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해양경찰청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사무A	기간제근로자 (사무직)	1명	계약일~2026.8.3.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본 공고문은 주요 업무를 위주로 명시하였으며, 채용대상자는 해당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채용기간은 휴직자의 조기 복직 시 달라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기간 만료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근로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다. 보 수

채용분야	기본급(월)	지급기준
기간제근로자(사무직) 인재선발 분야	2,091,530원(공제전)	「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7조(보수)에 따름

라. 복리후생 :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별도 지급 등

마.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바. 수습기간 : 채용 계약 후 3개월

※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인 자로(2007.12.31.이전 출생자)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25. 7. 31.) 예정일까지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
-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 7. 31.)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
기간제근로자 (사무직)	▪ 해당 분야 업무수행(인재선발 사무)이 가능한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불합격 기준

- 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 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5. 7. 11.(금)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게시
원서접수	'25. 7. 11.(금) ~ 21.(월)	▶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접수마감 : 7. 21.(월)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 7. 25.(금)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5. 7. 31.(목)	▶ 면접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5. 8. 6.(수)	▶ 개별통지 또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발표 당일 **17:00경** 게재 예정, **문의전화 자제**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7.11.(금) ~ 7.21.(월)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우편접수 주소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 훈련담당관실 인재선발계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 ※ 등기우편 접수(원칙)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 응시자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미제출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① 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③ 이력서 <별지 3호 서식>
- ④ 자기소개서 <별지 4호 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5호 서식>
- ⑥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6호 서식>
-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7호 서식>
- ⑧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⑨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별지 8호 서식>
- ⑩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별지 9호 서식>

7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중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연락불능, 응시번호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채용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보수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시험 응시자는 면접 시 반드시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8. 6. ~ 9. 5.
- 기타 사항은 교육훈련담당관(☎ 032-835-2436)으로 문의바랍니다.

- ① 「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붙임 2

직무기술서

구 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기간제근무자 (계약체결일 ~ '26. 8. 3.)	인재선발	1명

계약 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천광역시)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관련 경력 및 자격, 임용결격 사유 등 조회 ○ 채용관련 제반 문서 및 서류 편철·보관·관리·이관 ○ 채용시험 진행 물품 관리 ○ 채용 및 사무업무 보조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성, 청렴성, 책임감, 사명감, 보안성 ○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및 자격증 조회 등 각종 채용관련 조회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원활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워드, 엑셀, ppt등) ○ 문서 편철 보관 및 물품 보관 관리에 대한 지식 등
------	-------------------------------------------------------------------------------------------------------------------------------------------------------------------------------------

응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인재선발 사무) 업무 수행 가능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8세 이상인 자로(2007.12.31.이전 출생자)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또는 면제 ○ 「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 1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1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

우대요건	없음
------	----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 (원본)

해양경찰청장 귀하

본인은 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근로자 / 사무A	
응시자격		○ 해당분야 업무수행(인재선발 사무)이 가능한 자	
※응시번호	※ 추후 문자로 개별 발송 예정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등 채용 관련 문자가 발송되오니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근로자 / 사무A	
응시자격		○ 해당분야 업무수행(인재선발 사무)이 가능한 자	
※응시번호	※ 추후 문자로 개별 발송 예정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집결시간 종료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예) 기간제근로자 / 사무A
- ② 응시자격 : 해당분야 업무수행(인재선발 사무)이 가능한 자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가능>>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사무A	성명	
----------	----------	----------	-----	----	--

2. 경력 등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 (○○과)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면접시 활용 예정으로 작성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필히 제출
(경력 등 해당 없을 시 이력서 공통사항만 작성 후 제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자기소개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근로자 / 사무A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기간제근로자 / 사무A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직무기술서상 주요업무, 필요지식 등을 토대로 작성할 것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할 것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할 것

<별지서식 제6호>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학력·경력(병역)·자격·면허 등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항, 임용 결정사유,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 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조회 등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서식 제7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u>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u>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2.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p>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5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별지서식 제8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확인서)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관서	생년월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5. . . .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해양경찰청	채용방법	공개채용	채용직위(직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유	기간제근로자 채용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11호> *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 발송, 방문접수의 경우에도 해당양식 준용하여 제출

[보내는 사람]

--	--	--	--	--

응시구분	기간제근로자 (사무A)
성명	(예) 0 0 0
휴대폰	

2025년 해양경찰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출서류 재중 [관계자 외 개봉금지]

※ 제출서류는 '25. 7. 21.(월) 18:00까지 우편접수(소인분에 한함)

[받는 사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 채용담당자앞

☎ (032) 835 - 2436

등기 발송증 부착

2	1	9	9	5
---	---	---	---	---